



2025년 임금협약서

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 이라 한다.)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노동조합,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(이하 “조합” 이라 한다.)은 본 협약을 체결하며,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·이행할 것을 약속한다.

제1조 (임금협약의 기본원칙) ① 본 임금협약은 진흥원과 조합이 맺은 임금협약으로써 조합의 소속으로 전년부터, 임금협약체결 시점 기준 재직 중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. 단, 2025년도 중도 채용자는 본 협약 제3조(임금인상)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본 협약 제3조(임금인상) 대상에서 제외하며, 당해 연도 임금인상률을 정률로 적용한다. 이 외 사항은 본 임금협약 및 「임금피크제 운영 규정」을 따른다.

③ 진흥원은 조합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임금의 적정액을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, 본 협약에서 누락된 내용 등의 이유로 조합과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.

④ 진흥원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임금 관련이나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, 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서 및 관련 법률에 따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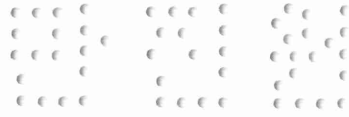
제2조 (용어의 정의)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진흥원 「보수 규정」을 따른다.

제3조 (임금인상) ① 조합 소속의 일반직 조합원은 2025년 기본연봉을 4.4%(2025년도 기본인상률 3.0% +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1.4%) 인상한다.

② 조합소속 공무원 조합원은 「2025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」의 시급액을 따른다.

③ 조합소속의 계약직 조합원은 진흥원 「계약직 관리 규정」 제18조(보수)를 따른다.

제4조 (임금지급의 원칙) ① 진흥원은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



라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임금지급일이 토·일요일 및 휴일(휴무일)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.

② 조합원이 퇴직·휴직·중도 입사한 때의 임금(각종 수당, 복리후생비 등 포함) 지급은 근무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단, 퇴직 또는 휴직 시 초과 사용 및 초과 지급된 임금(각종 수당, 복리후생비 등 포함)은 환수한다.

제5조 (성과급) ① “성과급”이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과 별도로, 일시불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.

② 진흥원과 조합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예산확보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.

③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예산확보 시 진흥원은 「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 지침」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.

제6조 (임금 체계의 개선) 진흥원과 조합은 일반직 및 공무원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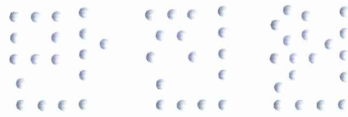
제7조 (공무직의 복리후생) ① 조합소속의 공무직 조합원에 대하여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 및 「부천시 생활임금 매뉴얼」에 따라 정액급식비는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 시간 환산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.

② 조합소속의 공무직 조합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비를 연 50만원(근속 및 부양가족 가산 적용) 적용한다.

제8조 (출산장려를 위한 수당지급) ① 진흥원은 국가적 과제인 출산장려를 위하여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중 만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첫째자녀 5만원, 둘째자녀 8만원, 셋째 이후 자녀 12만원으로 지급한다.

② 진흥원은 조합원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. 단,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부천시 출산축하금의 지급기준을 따른다. 단, 본 수당은 신규 수당 신설 및 예산 확보 후 지급하며, 진흥원과 조합은 수당 신설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.

③ 출산휴가, 유산휴가, 사산휴가,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병가,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



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. 단, 본 수당은 신규 수당 신설 및 예산 확보 후 지급하며, 진흥원과 조합은 수당 신설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.

- 제9조 (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범위)** ① 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소급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한다.
- ② 본조 제1항에 따라, 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여 소급되는 임금은 2025년 을 넘기지 않는다.
- ③ 본 임금협약의 소급으로 인하여 인상된 조합비는 소급 적용하여 최초 소급분 지급월에 일괄 공제한다.

제10조 (준용)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단체협약, 진흥원의 제규정을 따른다.

제11조 (협약의 효력) 본 임금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, 진흥원 측 교섭대표와 조합 교섭대표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 (공무직 조합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노력) 진흥원과 조합은 공무직 조합원의 월급제 도입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 등 근로조건외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. 단, 해당 제도의 시행에는 부천시의 예산 승인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상호 인식하며, 노사는 이를 위한 협의 및 예산 확보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하고, 관련 여건이 마련 될 경우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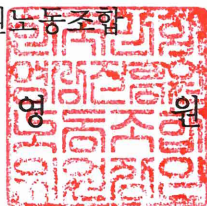
2025년 11 월 19 일

한국노총

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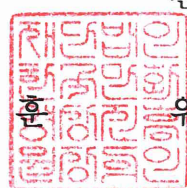
한국만화영상진흥원노동조합

위원장 이태영



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

장 백종훈



민주노총

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

위원장 엄길용

